
제2023-1회

전체학생대표자회의

2023. 2. 21.

심 의 안 건

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발 의 연 월 일 2023. 2. 12.

안 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

안건 상정 근거 「학생회칙」 제39조제1호

제안이유

- 「학생회칙」 제187조제1항에 따라 일부개정회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회칙안을 심의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○ 개정취지

- 심의 원칙과 회계 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이고 유연한 예산안 심의로 바꾸기 위함.
-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, 의결기구 및 재정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.

○ 주요골자

-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한 권한을 명시함.
- 제165조를 개정하여 4분기와 1분기의 기준점을 가을학기 종강일로 변경함.
- 제167조를 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함께 심의하여야 하는 원칙을 예산안 및 결산을 각각 심의하는 원칙으로, 심의 횟수를 연 3회에서 연 2회로, 심의 주기를 상반기, 4분기, 1분기에서 상반기, 하반기로 변경함.
- 제168조를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층기구의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.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: 붙임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: 별첨1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2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: 별첨3

참고사항

-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: 2023. 2. 12.
-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공고: 2023. 2. 16.

의결문안

-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한다.

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	중앙운영위원회
해당 회기의 명칭	제2023-4회 중앙운영위원회(2월, 임시회)
해당 회기의 일시	2023. 2. 12.
안건제목	심의안건 제2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
표결결과	총원: 21명/재적: 21명 재석: 19명/찬성: 18명/반대: 0명/기권: 1명
해당 의결사항의 의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. - 별첨2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 중 제59조의2에 관하여 제3항이 추가된 오기재를 정정함.

심의안건 제2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

발 의 연 월 일 2023. 2. 12.

안 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

안건 상정 근거 「학생회칙」 제39조제1호

□ 제안이유

- 「학생회칙」 제14조,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·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세칙안·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○ 개정취지

- 예산안 비율을 결정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, 경직된 예산안 심의 방식을 유연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.

○ 주요골자

-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예산안 비율을 매 반기 초에만 결정할 수 있는 시기적 제약을 해소함.
-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 또는 기층기구의 예산안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.

□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: 붙임

□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: 별첨1

□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2

□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: 별첨3

□ 참고사항

-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: 2023. 2. 12.
-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공고: 2023. 2. 16.

□ 의결문안

-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한다.

붙임**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**

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	중앙운영위원회
해당 회기의 명칭	제2023-4회 중앙운영위원회(2월, 임시회)
해당 회기의 일시	2023. 2. 12.
안건제목	심의안건 제3호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
표결결과	총원: 21명/재적: 21명 재석: 17명/찬성: 17명/반대: 0명/기권: 0명
해당 의결사항의 의사	- 원안대로 심의의결함.